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3.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3. 7
- 다. 상 정 일 자 : '97. 3. 18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자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나. 제안사유

-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항의 "각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 안 제2조 제2항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을 "규정된"으로
- 안 제3조의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 안 제13조 제2항 "가지는"을 → "갖는"으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 병 향)

-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97 - 28 |
|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7. 3. 7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개정 (안 제1조)
- "각위원회 위원"을 → "위원"으로 개정 (안 제2조 제2항)
-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을 → "규정된"으로 개정 (안 제2조 제2항)
- "일비"를 → "참석수당"으로 개정 (안 제3조)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각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을 "규정된"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하고 동조중 "일비를"을 "참석수당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u>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의 <u>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p> <p>① (생략)</p> <p>② <u>각 위원회 위원</u>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u>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u></p> <p>제3조(일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 <p>제1조(목적) - - - - - - - - (<u>이하 "위원회"라 한다</u>) <u>위원</u>의 - - - - - - - - - - - - - - - .</p> <p>제2조(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u>의 - - - - - - - - - - <u>규정된</u>- - - - - - - - - - - .</p> <p>제3조(<u>참석수당</u>) - - - - - - - - - - - - - - - <u>참석수당을</u> - - - - - .</p> |